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전월세 신고제 계도 1년 더 연장... 내년 5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가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이달 말에서 1년 더 연장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은 2024년 5월 31일로 연기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내부에서 여러 안을 놓고 검토를 했는데 현재로는 1년 더 유예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원 장관은 "지금은 전세가울, 역전세, 전세사기 문제가 켜여있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을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주택 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 행정에 행정력을 쏟는 것보다는 임대차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큰 틀의 공사를 해야 한다"고 계도기간 연장 이유를 밝혔다.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가졌다가 새 정부 출범 후 1년 더 연장했다. 내달부터 신고기간 내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었지만 한번 더 미뤄질 전망이다.

원 장관은 "과태료와 상관없이 신고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며 "지금 전세가울, 역전세, 강통전세, 전세사기 등이 켜여있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을 봐야 해서 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 행정에 행정력을 쏟는 것보다 전체적인 임대차 시장의 틀을 공사하면서 줄기를 잡은 시점에서 행정벌을 적용하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거래처 믿을 만 하나?... 세금포인트로 신용조사 하세요

수출 중소기업이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해외 거래처가 믿을 만한 곳인지 신용조사할 수 있는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가 6월 1일부터 개시된다.

18일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이인호)는 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금포인트는 납세액 10만원 당 1점씩 부여하는 일종의 마일리지다.

이날 국세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수출 시 수입기업의 신용도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 홍보 및 세정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법인)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 영업점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연간 1회 한도로 수수료 없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집되는 세무애로건의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은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호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어려운 대외여건에 직면해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위해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 나가겠다"고 전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15→20일 확대... 포괄 자료요구 원칙적 금지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전통지 기간 확대 및 현장조사 제한 등 세무조사 절차를 대거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6일 납세자 부담 완화, 적법절차, 적법과세에 따른 6가지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납세자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대상은 법인은 연매출 500억 미만, 100억 미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로 납세자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더라도 준비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서다.

현장조사의 경우 회계처리가 투명하고, 탈루혐의가 크지 않으며,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가급적 전체 세무조사 기간의 절반 이하로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라도 7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서울중부지방국세청 시범운영을 통해 향후 전국 모든 관서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